

## 처분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	
신청인	회사명 (전화번호: )	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			
처분 내용	공장 소재지			
	용지 면적(m <sup>2</sup> )	건축 면적(m <sup>2</sup> )	건설공정(%)	
	기준공장면적을 달성비율(제조업만 해당)		%	
	처분가격(백만원)	대지	건물감정 평가액	
	대지 지급 조건			

## 처분사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·제2항 및 제4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려고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관리기관

귀하

첨부서류	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	수수료 없음
관리기관 확인사항	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	

## 처리절차

